2021년 제2호

UNESCO ISSUE BRIEF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원격수업에서의 저작권 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문 무 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 글은 유네스코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제언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필자의 의견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원고 중간 발표회'를 통해 집필자가 주제 관련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중간 발표회 일자
2021년 6월 3일

중간 발표회 구성
발표 |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
토론 | 김종수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
토론 |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년 제2호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UNESCO ISSUE BRIEF

초중등학교 원격수업 전면 실시로 확인된

원격수업에서의 저작권 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

Ⅰ. 서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COVID-19)은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주며, 우리 사회에 '온택트(ontact)'가 빠르게 정착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거리두기로 사람과 직접 소통을 피하는 '언택트(untact)' 시간이 늘어나며 온라인으로 각종 활동을 대신하는 '온택트 문화'가 생활의 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학교가 폐쇄되며 14억 명 이상의 학생이 수업을 받지 못하자(UNESCO, 2020a), 비대면 '원격수업'이 학교 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도 2020년 3월 31일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초·중등학교가 유례없는 원격수업을 전면 시행했다. 그러면서 원격수업은 '저작권'이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접하며, 원격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 고충과 저작권 분쟁 우려가 연일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었다. 저작물의 '이용 제약'과 '접근 제한' 그리고 항시 존재하는 '저작권 분쟁 위험'이 원격수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내용이다.

- 기존의 '대면수업'은 저작물 이용 대부분이 복제를 수반하지 않는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저작권 문제 발생 위험이 사실상 거의 없다.[1] 저작물이 유인물로 복사되어 배포되더라도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만 배포되기에 분쟁 발생 소지가 많지 않다.[2]

- 반면, 원격수업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면수업과는 달리,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개별적 공간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여하며, 수업자료는 학생들에게 '복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수업자료에는 교사가 직접 제작한 것 이외에 교과서의 지문, 사진과 인터넷 상의 동영상, 음원 등 다양한 저작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원격수업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수업자료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용에서 발생한다. 저작물 복제 시의 '적정 분량' 논란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이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이 배포'될 위험이 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인터넷 뉴스들이 이러한 문제를 교사 인터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1] 우리 저작권법은 수업 여부와 관계없이, 비영리 공연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분량 제한 없이 이용(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2]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그동안 우리는 IT 선도 국가로 교육정보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과 환경 역시 잘 준비된 것으로 여겨 왔고 또 대부분 그러하다. 하지만 원격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생각하지 못한 저작권이 교사와 학생의 원격수업을 힘들게 하고,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까지 기피하는 과도한 사회적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전면개정 추진과 함께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하였다.[3] 저작권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원격수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인지한 것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함께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4]

본 글은 교사들의 저작물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해 원격수업에서 겪고 있는 저작권 고충 사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저작권 법·제도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및 해외 각국의 저작권 법·제도도 함께 비교하였다. 국제조약에 가입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수업 및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법률로 허용하면서도 그 이용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법과 제도를 다르게 운용하고 있어 비교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교육의 중요성만큼은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표방하는 가치이기에 각국의 법과 제도를 통해 우리의 저작권법을 비교해 본다면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3] [저작권법 전면개정] 4차 산업·원격수업 등 변화에 발맞춘 문체부 (아주경제, 2020.07.15.)

[4] 초중고 원격수업 콘텐츠 저작권 협의체 가동… 상반기 결론 목표 (전자신문, 2021.03.03.)

Ⅱ. 현황 분석

1. 원격수업 전면 시행

2020년 3월 31일,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는 코로나19로 개학이 몇 번이나 연기되며 학생·학부모의 고충이 크고 수능시험과 같은 중요한 학사일정에까지 차질이 생기면서, 수업을 연기만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에 따른 조치로, 1~2차 휴업명령까지는 방학을 조정하여 수업 일을 확보하고 3차 휴업명령 때에는 줄어든 수업 일에 비례하여 수업 시수도 감축하도록 하였지만, 더 이상 휴업이 지속된다면 대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 정상적인 대면수업과 학사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원격수업'이 유일하다.

- 하지만 온라인 개학을 통해 원격수업을 전면 실시한다는 갑작스러운 발표는 교사·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까지 적지 않은 충격을 주며, 새로움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부담과 걱정이 더 크게 와닿았다.

교육부는 원격교육에 대한 교사의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교육 운영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를 추진하였다.

-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한국교육방송공사(EBS: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교육청 단위의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플랫폼 e학습터, 에듀넷, EBS 온라인클래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쌍방향 화상수업 방법과 이용 가능한 민간자원 등을 안내하였다.

- 원격학습을 정규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과 '원격수업 성적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지역·교과·학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원격수업의 형태는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②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③ 과제 수행 중심 수업으로 나뉘어, 학교 여건에 따라 교사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표1 교육부(2020), 유형별 원격수업 운영 방법 제시

수업 유형	추진 방법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	• (학교)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사) 학생들이 해당 화상수업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문자 (메일) 등으로 제시한 후 전체 학생의 참여를 확인하여 진행 • (학생) 교사의 안내에 따라 화상수업도구에 접속, 수업 참여
②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학교) 학교 단위에서 활용할 학습관리시스템(EBS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위두랑, 민간툴 등)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교과·교사별로 자율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 • (교사) 학년·교과 특성에 따라 기존 콘텐츠 및 자체제작 콘텐츠를 해당 학습관리시스템에 성취기준별 학습적정량으로 등록 • (학생) 학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교사의 등록과제에 따라 학습을 수행(강의시청, 퀴즈풀이, 댓글토론, 과제수행, 질의응답 등)
③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학교) 공정한 학습관리 및 학습적정량 등에 관한 확인·점검 철저 • (교사) 성취기준 및 학생 학습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과제를 학급홈페이지, SNS 등에 제시, 전체학생의 참여 여부 확인 • (학생) e학습터, 학급홈페이지, SNS 등에서 수업시간별로 제공되는 과제를 수행하여 학급홈페이지, SNS 등으로 제출

2. 그간의 원격수업 준비 (1996~2019)

많은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우리처럼 원격수업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기반 환경과 여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일찍부터 추진해온 정부 주도의 교육정보화 사업 성과의 영향이 크다.

- 1996년부터 추진한 「교육정보화 기본 계획」에 의한 '교단선진화' 사업은 모든 교실에 최신 PC와 기자재, 인터넷망을 설치하여,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모든 학교에서 ICT활용 수업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교사·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크게 높아졌으며, 우수한 관련 기업의 성장 및 이러닝 산업 부흥은 이러한 현상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갔다.

-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기기 활용이 증가하는 2018년부터는 5차에 걸친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초·중등학교 5,413개교에 무선접속장치(AP: Access Point)를 설치하여, 원격수업을 위한 환경을 최종 마무리하게 되었다.[5]

- 이러한 이러닝 여건 조성과 교사,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은 저작권 법·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2006년). 당시 국제저작권조약 가입국 대부분이 수업을 위한 '전송'을 법령에 명문화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된 이례적인 조치였다. 이는 교육에 대한 사회 인식과 교육정보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일본은 2019년에야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물의 '전송'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단행하고 이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앞당겨 시행했다.)[6]

- 이와 함께 학교 이외에 교육청 등도 수업지원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2009)하여, 그동안 저작권으로 어려워하는 교육정보화 사업에 단비 같은 활력을 주었다.

---

[5] 6차에 걸친 「교육정보화 기본 계획」이 추진되면서 학교망 대역폭을 늘리고, 내부망을 업무망·학생망·무선망 등으로 분리하여 해킹 위험 등의 보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망을 구축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 백서 2020)

[6] 일본, 코로나19 대응해 원격수업에 새 저작권법 조기 적용 (연합뉴스, 2020.04.11.)

-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자 및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저작권지원센터)은 '학교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를 통해 학교 저작권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청년 강사를 통해 초중등 학생 대상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여 교사·학생의 저작권 인식 변화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이렇게 학교 교육을 위한 온라인 기반 환경 구축과 법·제도 정비, 교원 및 학생 대상의 ICT활용 및 저작권 교육까지 많은 노력과 지원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실시하게 된 원격수업 시 저작권으로 인하여 저작물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통제된 교실에서 잠시 진행하는 ICT활용 수업과는 달리,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공유해야 하는 원격수업은 저작권 문제를 남의 것으로만 여겨오던 그동안의 인식을 바꾸며, 수업마다 저작권에 대한 부담을 떨칠 수 없게 된 것이다.

3. 원격수업에서의 저작권 고충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 A(33)씨는 ‘온라인 수업을 처음 하다 보니 저작권 위반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서 ‘교사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이나 연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저작권 규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7]

이러한 언급은 교육부가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 2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격수업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 교사의 41%가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부담이라고 답변한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8] 대면수업과는 달리,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플랫폼부터 많은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까지 교사가 일일이 준비하여 직간접적으로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기에 고충이 여간 크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저작물 이용을 위한 교사들의 저작권 부담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가 느끼는 실제 저작권 고충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에서 발췌한 사례를 통해 그 원인과 문제를 확인해 본다.

가. 저작물의 ‘일부’ 허용에 따른 고충

사례 ① “교과서 자료를 활용하는 데도 제한이 있다. 대다수 출판사는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분량을 그대로 쓰거나 PDF 파일 형태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부 출판사의 경우 음원 배포를 일절 금지한 곳도 있다.”[9]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과서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하

[7] 온라인 수업하다 소송 당할라… (중앙일보, 2020.04.07.)

[8] 원격수업 관련 교원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 04.27.~29. NEIS, 응답교사 224,894명) 원격수업을 실제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 2가지는?
- 학생 출결확인 및 수업참여 독려(56.6%)
- 출석수업보다 많이 소요되는 수업 준비시간 부담(42.2%)
- 수업저작권 및 교사 초상권에 대한 침해 우려(41.3%)
- IT 기기 활용법 학습 등 새로운 기술 학습 부담(23.5%)
- 원격수업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 기기(노트북 등) 노후화 혹은 부족(18.1%)
- 교실 WIFI 지원 등 기본 인프라 환경 미흡(16.3%)

[9] 저작물을 얼마나 수업에 활용할지도 주의해야 한다. 2015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마련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글의 경우 전문의 최대 10%, 음원은 20%(최대 5분), 영상은 20%(최대 15분)까지 수업 자료로 쓸 수 있다.-온라인 수업하다 소송 당할라… (중앙일보, 2020.04.07.)

게 되었다. 이에 교사들로부터 원격수업 플랫폼에 교과서(PDF)를 올려도 되는지 문의가 쇄도하며, 교과서 관련 질문이 교육저작권지원센터(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다루는 단일 저작물 유형 관련 질문 중 가장 많은 상담 건수를 차지했다. 우리 저작권법은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면서 그 이용에 대해서는 '일부'로 제한하고 있다.[10] 교과서라도 다르지 않다. 수업을 위해 책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전부도 가능하지만, 복제를 통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허용된다. 해당 교과서를 구매한 학교라도 같다. 서책이 아닌 교과서를 PDF 파일로 복제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교과서를 '일부'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망연자실하며 당혹스러워한다. 학교 수업을 위해 제작한 교과서를 수업을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11]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긴급히 교과서 발행자 협의회를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교과서 전체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끌어냈지만[12] 이러한 문제가 교과서에 한정된 것은 아니기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접근제한 조치로 인한 고충

사례 ② "'강의를 녹화해 유튜브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네요.' 교사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학생들과 공유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수업임에도 현행 저작권법은 이러한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원격수업에서 동영상이나 도표, 사진 등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 수업 동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규정 때문이다."[13]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사용된 수업자료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접근제한 기능이 없는 유튜브에서의 수업자료 제공은 저작권법상 불가능하다.[14]

---

[10]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11] 저작권법 제25조3의 동일 조항에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개별 사례가 이에 포함되는지는 관련 지침 및 판례가 없어 누구도 판단하기 어렵다.

[12] 수업목적(고등학교 이하) 저작물 이용 FAQ (ver.2, 교육부, 문체부, 2020.08.28.) 8쪽.

[13] 온라인 수업, 저작권에 걸리면 어쩌지… 답 없어 속타는 교실 (서울신문, 2020.04.01.)

[14] 저작권법제25조12, 시행령 제9조1

사례 ③ "중학교 교사는 '쌍방향 수업의 경우 유튜브를 이용하려는 선생님이 많은데,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이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라는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이런 걱정 때문에 단방향 수업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15]

유튜브 라이브 기능을 활용하면 손쉽게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라이브 수업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사례 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튜브는 관련 기능이 없어 사실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어렵다.

사례 ④ "온라인 강의에 창작물을 학습자료로 쓸 경우 교사는 접근제한과 복제방지 조치를 하고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강의 영상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 같은 조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 시도교육청·학교마다 설명이 다르다고 하소연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접근제한'과 '복제방지', 그리고 '경고문구' 조치를 모두 요구하고 있다.[16] 하지만 '복제방지'는 학교에서 수용이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도 학교의 '복제방지' 조치 의무를 명확히 요구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증가하며 '복제방지'에 대한 혼란과 문의가 급증하자, "접근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제한된 학생과 교사만이 이용 가능하여 복제방지 조치도 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안내[17]하며 한시적으로 복제방지 조치를 유예하고 있다.

사례 ⑤ "고등학교 교사 B(35)씨는 '젊은 교사도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고, 학교마다 안내하는 방법도 달라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라며 '온라인에 올려놓은 자료를 다른 교사나 학생이 유출할 경우에는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고 했다."[18]

원격수업을 위해 접근제한 조치를 취해도 결국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의해 저작물이나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수 있어 교사들의 심적 부담은 항상 존재한다. 교육청마다 수업자료 유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지도하고 있으나 완전한 배포 차단은 어렵다.

---

[15] 사례 ③, ④ 온라인 수업하다 소송 당할라… (중앙일보, 2020.04.07.)

[16] 저작권법제25조12, 시행령 제9조1, 2

[17]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 중 수업목적(고등학교 이하) 저작물 이용 FAQ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020.04.14.)

[18] 사례 ⑤, ⑥ 온라인 수업하다 소송당할라… 교사 기죽이는 '저작권 사냥꾼' (중앙일보, 2020.04.07.)

다. 교육기관 대상의 폰트 합의금 요구

사례 ⑥ "저작권 침해 우려가 가장 큰 저작물은 글꼴이다. 일부 무료 글꼴도 사용 조건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무료 사용 범위를 '개인'으로 한정해 학교에서 쓸 수 없거나,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인쇄는 금지한 경우다."[19]

폰트(글꼴) 분쟁은 교육기관 관련 저작권 분쟁 중 가장 많은 사례 중 하나로, 최근 교육기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폰트(글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지만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어 무단 이용 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20] 따라서 일반 저작물과 같이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복제, 배포는 허용되지만,[21] 문서 작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폰트파일을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번들폰트만을 주로 사용해온 대부분의 교사는 유료폰트 라이선스의 개념과 사용 방법에 익숙지 않아 피해를 겪는다. 그러다 보니 폰트 분쟁은 자주 사용하는 번들폰트의 이름과 모양(디자인)까지 유사한 유료·무료폰트에서 자주 발생한다. 최근에는 개인에게만 사용을 허용해 놓고 이를 업무 용도로 사용한 교사를 집중 단속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 ⑦ "글꼴 저작권자와 교육청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윤서체'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윤디자인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학교당 200만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소송은 올해 초 대법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지만, 학교에선 다시 한 번 대규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22]

윤디자인은 자사 폰트를 무단 이용하는 전국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300억대 배상 소송을 예고하고,[23] 실제 수도권 지역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폰트 무단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인천지역 분쟁은, 변론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이 없었고, 윤서체가 사용된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

[19] 온라인 수업하다 소송당할라… 교사 기죽이는 '저작권 사냥꾼' (중앙일보, 2020.04.07.)

[20] '폰트(글꼴, 폰트 디자인)'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 글꼴파일 저작권 바로알기(문체부, 2019.01) : 글자체(폰트 도안)와 글꼴(폰트) 파일의 차이, 6쪽

[21] 저작권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2항

[22] 온라인 수업하다 소송당할라… 교사 기죽이는 '저작권 사냥꾼' (중앙일보, 2020.04.07.)

[23] 1만2천 개 초중고 표적, 폰트 무단 사용 300억대 소송 예고 (한국경제, 2015)

‘일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24] 하지만 인천 분쟁의 경우 윤디자인이 승소는 했으나 청구한 손해배상금 4,000만원에서 100만원만 인정되어 윤디자인 측에서도 판결에 만족할 수 없었다. 이에 윤디자인은 다시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으나 인천과는 달리 교육청의 적극적인 입증 노력을 통해 무단 이용 사실이 없음이 받아들여져 재판에서 패소하였다.[25]

이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윤디자인의 폰트 분쟁은 중단되었지만 이를 모방하는 타사의 폰트 분쟁은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탑재된 문서에 유료폰트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무차별 ‘내용증명’ 요청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소명해야 하는 입장의 학교와 교육청으로서는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례 ⑧ “‘교사가 알아서’ 안 돼! … 법률지원 등 보호 대책 필요,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책임을 교사에게만 미루면 학교 수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저작권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법률지원이나 자문을 제공하는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6]

저작권 분쟁의 대부분은 합의로 끝나며, 합의에는 배상이 따른다. 저작물을 무단 이용했다면 합당한 합의를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처사이다. 하지만 저작물의 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책임이 없는 사용에까지 로펌을 동원해 학교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비난을 받아야 하며, 교사와 학교도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저작권 법률 전문지식과 분쟁 경험이 많은 로펌을 상대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합의금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까지 불사하는 것은 교사 또는 학교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결국 부당한 요구에도 합의를 선택하게 되고,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늘어만 간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방안을 모색해 오다 2020년부터 17개 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27] 이를 위해 교육기관 저작권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교육학

[24] 인천교육청, 폰트 무단사용 문제 해결 ‘진땀’ (기호일보, 2017.06.07.)

[25] 서울시교육청, '윤서체' 폰트 저작권 항소심 승소 (머니투데이, 2019.10.27.)

[26] 온라인 수업하다 소송당할라… 교사 기죽이는 ‘저작권 사냥꾼’ (중앙일보, 2020.04.07.)

[27] “전국 453개 초·중·고, 폰트 저작권 피해 경험”…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키로 (헤럴드경제, 2020.01.02.)

술정보원(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 '학교 저작권 현안 지원 사업'을 의뢰하였다. 현재 교육저작권 지원센터에서는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상담과 분쟁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 전용 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폰트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28]

라. 수업자료의 보존 문제

사례 ⑨ "교육부·문체부, 전국 초중고 저작권 유예 기한 '2021년 2월'로 합의 논란, 코로나19 속에 전국 초중고 교사들이 만든 온라인 수업자료 수백만 건이 삭제될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저작권 유예 기간으로 잡은 2021년 2월 말까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해당 자료들을 일괄 삭제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29]

학교 수업을 위해 '전송'이 추가되던 2006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 '수업이 종료되면 사용된 저작물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있었으나, 수업 때마다 반복적으로 저작물을 탑재하고 삭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아 최종 개정 시에는 해당 문구가 제외되었다. 이후, 저작물의 이용 기간은 '온라인 수업이나 사이버학습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으로 안내되고 있다.[30]

수업목적으로 허용된 저작물의 이용은 수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시행된 원격수업의 경우에도 역시 수업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플랫폼에 탑재된 저작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기사는 지적한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을 시행하며 많은 수업자료가 플랫폼에 탑재되었을 텐데, 기사는 마치 원격수업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오해를 준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수업자료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교사가 창작한 수업자료도 있고, 저작물을 사용했더라도 공정이용 범위 내에서 사용했더라면 삭제할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사는 이런 세부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우려만을 확대하여 보도하고 있다. 어쩌면 교사 대부분도 잘 못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학교 수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양질의 많은 자료들이 보다 많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저작권으로 인해 삭제될 위험에 있다.

---

[28] 폰트 저작권 걱정은 이제 그만! 학교에 점검프로그램 배포 (한국교육신문, 2021.05.03.)

[29] 온라인 수업자료, 6개월 뒤 수백만 건 삭제될 판... 저작권 장벽 (오마이 뉴스, 2020.08.10.)

[30]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문체부, 2016.03.) 수업 또는 수업지원 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요건

4. 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 실태

원격수업에 따른 교사들의 저작물 이용 고충이 이슈화되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및 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마침 저작권 어려움이 연일 이슈화되던 시기에 전국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라 저작물 이용 실태를 분석하는 데 그 의미가 더 있다.[31] 다음은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 주요 설문 조사의 결과이다.

(저작권 인식) 최근 5년간 저작권 교육을 1회 이상 받은 초·중등교원은 전체 교원의 약 94%로, 실제로 많은 교사가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들 중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방법 질문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답변한 교사가 46%밖에 되지 않아 저작권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교원 대상의 저작권 교육은 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특강 형태의 1~2시간 단발성 교육으로 제공되어, 저작권 법·제도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학교 맞춤형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32]

(저작권 고충) 초·중등교원의 36.5%가 학교 수업에서 저작권 고충을 항시 경험하고 있고, 전체 교원의 99%가 학교 교육을 위해 저작권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저작권 고충은 저작물을 자주 사용하는 초등학교와 음악·미술 교과, 5년~10년 미만 경력의 교사가 가장 많이 겪고 있고,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교급, 교과별, 경력별 구분과 관계없이 교사 대부분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원격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 어려움이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의 사용) 학교 수업의 90% 이상이 교과서 외의 저작물을 수업에 자주 사용[33]하고 있으며,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저작물은 '사진'과 '단평동영상'으로 조사되었다.[34] 원격수업에서 저작물을 공유하는 비율은 전체 수업의 73%[35]이며, 저작물 이용의 25~30%는 '공정 이용 범위 내'

[31]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08.10.~20.): 초중등교원 약 65천 명이 응답

[32] 초등담임 및 정보·컴퓨터 교사가 저작권 교육을 가장 많이 이수, 교사의 54%는 원격수업을 위한 '보호조치'를 알지 못하고 있음. 저작권 이해도는 정보·컴퓨터 교과 교사가 가장 높고, 5년 미만 경력의 교사가 가장 낮음.

[33] 15년 이상 경력의 고등학교 교사가 '교과서'만으로 수업을 가장 많이 실시

[34] 교사 52.5%는 매 수업마다 '단편동영상' 사용 (대면수업 38%, 원격수업 49%)

[35] 대면수업 시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례의 약 24%가 학생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며, 학생에게 가장 많이 전달하는 저작물은 '단편동영상' (대면수업 36%, 원격수업 89%)

에서 저작물을 사용하고, 저작물 이용의 40~45%는 저작물 분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작물이 '사진'과 '단편영상'[36]임을 고려할 때 저작물의 이용 분량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면수업보다 원격수업에서 저작물의 이용 분량이 많고, ▲특수학교 ▲음악·미술 교과 ▲짧은 교사 경력 등의 특성에 해당하는 교사가 많은 분량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음악·미술 및 국어 교과 교사가 '전체이용'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교사의 36%는 저작물에 따라 '전체이용'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응답)

표2 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 분량 사례

수업 유형	공정이용 범위	수업목적 이용[37]	50% 이용	전체 이용
대면수업	32%	29%	19%	21%
원격수업	27%	27%	22%	23%

마지막으로, 수업을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저작물 수집처 조사 결과 '유튜브(23%)'와 'SNS 커뮤니티(18%)' 순으로 답변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원격수업에 많이 활용될 저작물 수집처 역시 '유튜브(37%)'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36] 원격수업에서 허용 분량 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하는 저작물은 '단편동영상'이며, 저작물의 '전체분량'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진'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임
- 허용 분량 초과 이용: 단편동영상(이용의 55%) > 음원(이용의 45%) > 장편동영상(이용의44%)
- 전체 이용: (원격수업) 사진그림(30%) > 프로그램(29%) > 단편동영상(28%) > 악보(27%) > 음원(23%)

[37] 수업 목적상 사용 가능한 저작물의 분량: 어문 10%, 음원 20%(최대 5분), 영상 20%(최대 15분) 이내 – 대학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2016)

Ⅲ. 국내 저작권법과 해외의 저작권 법·제도

학교 교육을 위한 국내외의 저작권 입법례를 보면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보상금 지급 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이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협의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하거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공정이용 조항[38]을 도입하기 이전부터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재산권제한 조항을 운용하며, 교과서의 저작물 게재와 수업 목적상의 저작물 이용을 허용해 오고 있다. 2009년에는 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의 수업지원 목적에도 학교와 동일하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다. 단 교육청은 학교와 달리 저작물 이용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39] 보상금은 2015년에야 교육청과 권리단체 합의를 통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허용 범위 역시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허용 분량을 '일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저작물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체부가 고시한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은 수업 목적 또는 수업지원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분량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산정 제외 사항인 '공정이용'의 범위 만을 설명하고 있다.[40] 따라서 저작권 상담은 현재 '일부'에 대한 유일한 해석인 「대학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차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41] 하지만 「대학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저작물의 특성이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비율로만 저작물의 범위를 정하여 현실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분량이 짧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이다. 애초에 '시'처럼 분량이 짧거나 '사진'과 같은 특성의 저작물은 그 일부만 사용하면 내용 전달이 어려워 대체적으로 '전체' 이용을 허용한다. 그렇다면 수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악보, 신문기사, 뉴스, 음원, 단편영상 등은 어떨까? 분량이 길지 않기에 전체 이용이 가능할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기준, 판례가 없기에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현행 기준에 의하면 수업 목적이라도 악보와 기사는 어문저작물 기준 10%, 5분 정도의 음원과 뉴스 영상은 전체 분량의 20%인 1분 이내의 범위에

[38]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39] 수업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보상금 지급은 학생 1인당 250원인 반면, 대학은 사이버대 1,100원, 전문대 1,200원, 일반대 1,300원을 지급함.

[40]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문체부, 2016)의 보상금 미지급 이용 분량: 음원 5%(최대 30초), 영상 5%(최대 1분)의 이용

[41] 어문 10%(1단원), 음원 20%(최대 5분), 영상 20%(최대 15분) 이내

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부' 이용 역시 추가 설명이나 가이드라인, 판례가 없다. 그러다 보니 허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현실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긴급 실시되는 원격수업체제에서조차 정부와 권리자의 합의를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교과서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작권법상 부득이한 경우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얼마나 제한적으로 어렵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저작물의 허용 분량이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보상금제도의 운용 여부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를 보인다. 보상금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우리와 유사한 10%를 인정하고, 보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은 15%를 (연구목적으로는 최대 75%를 이용할 수 있다. 공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은 "수업과정에 있어서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일부'라고 표현한 우리와 비교된다.

학교 교육(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 수준을 각 국가별 특성을 통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42] 세부 사항은 붙임으로 설명을 대신한다.

- 조사 대상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법상 명시적으로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실연 및 전시에 관한 권리 제한 이외에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으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회적 이해 및 법체계에 따라 상이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사 대상국 절반이 '보상금 지급 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다.

- 영국·프랑스는 주정부(교육부)가 집중관리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기관의 저작권 라이선스 협상과 협약을 추진하며, 교육기관의 저작권 부담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 핀란드·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는 보상금 지급 의무 규정 없이 권리자와 이용자 합의에 의한 확대집중이용허락 라이선스 협약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4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저작권 이슈 리포트 (중앙대학교 변용완, 2021)

표3 교육(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을 위한 국가별 법·제도 비교

국 가	수업목적 법정허락 규정		라이선스 협약	
	권리제한 규정	보상금 의무화 (초중고 기준)	확대집중이용 허락단체 (ECL)	집중관리단체
한국	○	×	×	–
미국	×	×	×	○
일본	○	○	×	–
영국	○	×	×	○
프랑스	○	○	×	○
독일	○	○	×	○
호주	○	○	×	○
북유럽	○	×	○	–

[붙임] 교육(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을 위한 국가별 법·제도 특징

한 국	법제	수업목적 권리제한(○) + 보상금(고등학교 이하 ×)

- 학교 교육을 위한 권리제한과 함께 '원격수업 허용'을 빨리 도입
  - ICT 활용 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전송)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2006)
  - 수업 목적 및 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의무화[교육청(250원/명), 대학(1,200원/명)]

-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분량을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원격수업에서의 수업자료 이용 불편과 고충 증가
  - 저작물 허용 기준(문체부) : 어문 10%, 음원 20%(최대 5분), 영상 20%(최대 15분)

미 국	법제	수업목적 권리제한(×) + 라이선스 협약(집중관리단체)

- 학교 교육을 위한 별도의 권리제한 규정 없이[1] 일반규정만으로 '공정이용' 여부 판단
  - 공정이용 기준 : 비영리 목적, 저작물의 성격, 저작물의 분량,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영향

- 권리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라이선스 제도 운용과 권리단체와 협의된 가이드라인이[2] 광범위하게 활용됨. (권리단체 190개)

Report on Copyright and Digital Distance Education (1999, U.S. Copyright Office)
수업자료를 원격교육을 통해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추가적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공정이용에 의해 포섭될 수 있다.

일 본	법제	수업목적 권리제한(○) + 공중송신 보상금(○)

- 한국과 가장 유사한 권리 제한 규정 운용
  - 2018년 개정으로 원격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화
  - 개정 이유 : ICT활용 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 한계, 권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어려움, 교육기관과 권리단체 간의 법해석 혼란, 교육기관의 저작권 이해도 부족 등

-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를 2020년 4월부터 조기 시행 (보상금 지급 기준은 추후 협의 예정)
  - 권리단체 보상금 요구액 : 유치원(620원), 초등학교(1,200원), 중학교(1,800원), 고등학교(4,400원)

[1] 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실연, 전시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되는 중개된 교육활동의 일부로서 실연, 전시의 경우에는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제110조 1, 2)

[2] ① 서적, 정기 간행물의 복제 (1976) ② 음악 저작물 이용 (1976) ③ 방송, 녹화 (1981) ④ 교육 멀티미디어 공정 이용 (1996) ⑤ 원격교육과 저작권(1999) ⑥ 교사 및 사서의 저작물 복제 (1999)

영 국	법제	[수업목적 권리제한 + 보상금(×)] + 라이선스 협약(집중관리단체)

- 교육을 위한 권리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라이선스에 의한 계약이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권리 제한보다 우선'한다는 저작권법 규정에 의해 집중관리단체와 협약하는 '라이선스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제한 규정 : 학교 교육을 위해 12개월간 저작물의 5% 이내 복제 허용 (보상금·사용료 ×)

- 교육부, 초·중등 공립학교의 저작권 경감을 위해 10개 집중관리단체와 라이선스 체결
  - 서적, 신문, 악보, 방송, 음악, 영화 저작물 이용을 위해 9,400원/명 지급 (저작물의 양적제한 없음. 단 악보는 10%까지만 허용)

프랑스	법제	[수업목적 권리제한 + 보상금(○)] + 라이선스 협약(집중관리단체)

- 교육목적의 저작물 복제, 상영·연주·공중송신 등에 대해 보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보상금과 라이선스를 포함한 합의로 운영되고 있음.
  - 운영 방식 : 복사·복제(보상금), 디지털 복사·복제(라이선스), 프로젝션 등의 이용(보상금+라이선스)

- 교육부·대학총장회 주관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에서의 설명 목적에 의한 책, 출판된 음악저작물, 정기간행물, 시각예술 사용에 관한 합의서」 체결
  - 보상금 기준 : 서적·예술작품(21억), 음악저작물(2억), 영상저작물(2억), 음원은 30초 이내(10% 이내), 영상은 6분 이내(10% 이내)
  - 라이선스료 기준 : 초등학교 1,580원/명, 중등학교 2,350원/명

독 일	법제	[수업목적 권리제한 + 보상금(보상청구권)] + 라이선스 협약(집중관리단체)

- 교육 목적의 권리 제한 규정과 보상금 지급 의무를 위한 '보상청구권' 존재하며, 라이선스(음악 등) 제도가 보완책으로 운영
  - 독일은 교육을 포함해 대부분의 복제·공중제공에 대해 「저작자에 대한 상당한 보수를 지급」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 저작물의 이용범위, 이용량 등의 개정(2017)에 따라 보상금 기준 협의 진행 중
  - 개정 주요 내용 : ① 수업 목적 복제량이 10%에서 15%로 확대 ② 일러스트레이션, 전문·학술잡지의 편집구성물, 기타 소량 또는 절판 저작물은 전부 사용 허용(보상급 면제)
  - 보상금 : 2,000원/명 | 라이선스 : 음악 130원/명, 서적, 영화 등 2,200원/명

호 주	법제	수업목적 권리제한 + 보상금(보상통지제도)

- 공정한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교육 목적 권리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기관이 권리단체에 저작물 이용을 신청하는 '보상 통지' 제도 운영
  - 보상금액은 '교육기관과 집중관리단체와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는 저작권 법정제도에 의해 정함, 교육기관은 교섭을 위해 '피크바디'에 이를 위임

-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 분량 조항을 삭제하고, 합의 사항으로 규정 (2018)
  - 문화부 요청에 의해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단체가 공동으로 저작권법 개정안 제안
  - 보상금 : 서적·신문·방송 19,000원/명 | 라이선스 : 음악 192원/명

- 주정부, 교육기관용 저작권 제도와 라이선스 안내를 위한 Smartcopying 사이트 운영
  - 사례별 보상금 적용 및 개별 권리 처리 안내, 교사·학생 대상 저작권 연수 실시

북유럽 국가 : 덴마크·핀란드·스웨덴 등		
법제	[수업목적 권리제한 + 보상금(x)] + 라이선스 협약(확대된 이용허락제도)	

- 학교 교육을 위한 권리 제한 규정과 함께, 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저작물의 이용은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제도에 의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북유럽국가 대부분이 1970년 전후로 하여,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제도(ECL: Extended Collective License)를 저작권법에 도입하여 운영함.

-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ECL 요건을 따를 것을 저작권법에 명시하고 있음

> 덴마크에서 ECL은 저작권 처리를 원활히하고 권리자, 이용자 및 일반 공중의 이익을 촉진시키는 제도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음. 폭넓은 분야에서 저작권의 집중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신뢰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평가 결과의 주요 이유

- 초중등학교 및 대학 대부분이 교육 활동을 위한 ECL계약을 체결하고 저작물을 이용
  - 덴마크 사례 : ① Copydan Writing(어문저작물 단체) : 1개 소재의 20% 이하(6개월/명) ② Copydan Visual(시각예술물 단체) : 2,000 ~ 5,000원/명, 사용 분량 제한 없음.

2021년 제2호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발간일 2021년 6월 30일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집 국제협력팀 백영연 전문관
디자인 수카디자인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간행물 등록번호 IR-2021-RP-2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www.unesco.or.kr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UNESCO ISSUE BRIEF